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근거 명확화(안 제1조의2)

1)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간의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결핵예방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19442호, '23. 6. 13. 공포, '23. 12. 14. 시행)

2) 이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법률과 부합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그간 미반영된 법률개정사항을 영 제14조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일몰 해제(제15조 삭제)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결과('20년) 재검토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적은 사안으로, 일몰 해제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17조에 따른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u> <u>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u> <u>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u> <u>3.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u> <u>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u> <u>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u> <u>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u>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제13조

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
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
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
야 한다.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별
제10조의2제2항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신 설>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
무

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
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
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
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u>의료기관 중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u> 5. ~ 8. (생략) <u><신설></u> 9. ~ 11. (생략) <u>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4. ----- <u>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u>----- ----- 5. ~ 8. (현행과 같음) <u>8의2. 법 제17조에 따른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u> 9. ~ 11. (현행과 같음) <u><삭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7326